

폐기물처리 [] 사업
[] 사업변경 계획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0일(폐기물 수집·운반업의 경우 20일)	
제출인	① 성명(대표자) 또는 법인명		②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	
	③ 주소(사무실) (전화번호:)			
사업 개요	④ 상호(명칭)			
	⑤ 업종		⑥ 사업자등록번호	
	⑦ 영업대상 폐기물			
	⑧ 영업구역			
	⑨ 시설·장비 설치예정지			
	⑩ 사무실 예정지			
	⑪ 사업착수 예정일		⑫ 처리업허가 신청예정일	
⑬ 시설·장비 설치내용				
시설·장비명	규격(능력)	소재지	방지시설명	규격(능력)
⑭ 변경사항	변경 전		변경 후	
⑮ 변경사유				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·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
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☐ 사업변경

제출인: _____ 년 월 일 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, 유역(지방)환경청장 귀하

<p>첨부서류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폐기물 수집·운반업: 수집·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·운반계획서(시설 설치,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 계획을 포함한다) 2. 폐기물 중간처분업,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(시설 설치,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) 나.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(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,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) 다.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서서(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 정하되,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,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,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) 3. 폐기물 중간재활용업,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(시설 설치,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) 나.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(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,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) 다.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서서(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되,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,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,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) 	<p>수수료 없음</p>
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

작성방법

- 처리절차

